

이사회 규정

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 이사회규정

제정	2020년 12월 1일
개정	2021년 6월 14일
개정	2022년 2월 7일
개정	2022년 7월 25일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 이사회(이하 '이사회'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본 규정 제15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-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.

제2장 구 성

제4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 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.
- ②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대행하되, 지정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1. 사내이사 상위직급자와 기타비상무이사 중 연장자

2. 사외이사

제6조 (삭제)

제7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이사회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전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안전보건담당 최고책임자는 제15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연간 안전보건 계획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회사의 안전보건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3장 회 의

제8조 (대표이사의 선임 및 직무)

-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결의로 선임하며, 선임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대표이사의 결원 또는 유고 시에는 제5조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 (소집)

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10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1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는 소집은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2조 (의사의 진행)

이사회는 의장은 이사회를 진행하고,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, 특정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3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는 결의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2항의 결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4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회 내에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
 1. 감사위원회
 2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 3. 내부거래위원회
 4. ESG위원회
 5. 기타 이사회 결의로써 그 설치를 결정한 위원회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단,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

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,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는 사외이사가 되도록 한다.
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상법 제393조의 2 제5항에 따르고, 본 규정을 준용한다. 단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.

제15조 (부의 및 보고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상법 및 정관상의 이사회 결의사항

- 주주총회의 소집
- 영업보고서의 승인
- 재무제표의 승인
-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공동대표의 결정
-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지점의 설치, 이전 및 폐지
- 신주발행사항의 결정, 실권주 처리
-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 발행
- 사채의 발행
- 전환사채 발행사항의 결정
-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의 결정
-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
- 준비금의 자본전입
- 명의개서 대리인의 지정
-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결정
-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흡수합병, 신설합병 또는 분할,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갈음공고 결정
-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

2.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

-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
-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
-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, 변경 또는 해약
-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현금,주식,현물 배당 결정

- 자본감소
- 주식의 소각
- 정관 변경안
- 이사의 보수안
-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·해임안
-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
-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

3.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(별첨 참조)

- 자산재평가
- 중요한 대규모 시설투자 및 출자
-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의 취득·처분·자금의 차입·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및 보증
-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내부거래

4.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

- 전략적 사업방향
- 당년도 업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, 목표합의

5. 인사 관련 사항

-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집행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
- 재무담당 최고임원의 선임 및 해임
-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
- 안전보건담당 최고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

6. 이사 및 이사회,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

-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승인
-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,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-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
- 이사의 경업승인 및 개입권의 행사

7.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3. 준법지원인의 회사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결과
4. 연간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
5. 집행임원의 징계 결과
6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
7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8. 재해 예방을 포함한 연간 안전보건 관련 계획 및 활동에 관한 사항

제16조 (위임)

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7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안건,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.

제18조 (사무국)

이사회는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,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,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4 장 집행임원

제19조 (집행임원)

- ① 이사회는 그 결의로써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집행임원(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)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② 이사는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1. 6. 1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2. 2. 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2. 7. 25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별 첨) 이사회 상정기준

【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】

구 분	유 형	상정 기준
시설투자	신규 및 증설 투자	건당 4,000억원 이상
출자	신규 및 증설 투자를 위한 출자	건당 2,000억원 이상
	타회사 주식 취득	건당 1,000억원 이상
자산의 취득	시설투자 및 출자를 제외한 자산 취득	건당 1,000억원 이상
자산의 처분	주식의 매각	건당 1,000억원 이상
	자산 및 영업의 일부 양도	건당 1,000억원 이상
자금의 차입	사채	연간 한도 설정 및 증액 (매출채권 담보부 차입 제외)
	차입	
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및 보증	담보제공	건당 1,000억원 이상
	채무보증	건당 2,000억원 이상